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김선교·최수진·박충권

이헌승 · 김성원 · 정연욱

구자근 · 김예지 · 곽규택
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·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·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 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71조제2항제4 호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2항제4호 중 "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"를 "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1조(휴직) ① (생 략)	제71조(휴직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	②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			
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의			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	
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			
명하여야 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	4. <u>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</u>		
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	학년 이하의		
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			
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			
된 때			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